

결 정

2018 - 1058 신문윤리강령 위반
慶南日報 발행인 고 영 진

주 문

慶南日報 2018년 2월 9일자 4면 「설날 앞두고 “가래떡 뽑아요”」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

慶南日報 2월 9일자 4면 사진

慶南日報는 함양군이 제공해 뉴스1이 2월 8일 9시59분에 송고한 「‘가래떡 뽑아요’」 제목의 사진을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.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, ④(사진

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박 재 현	박재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제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. ④(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)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, 그림, 음악, 인터넷게시물, 댓글, 기타 시청각물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.